

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149
------------	------

제출년월일 : 2007. . .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시설물의 설치·유지 관리·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하는
-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는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내용(안 제3조 ~ 제5조)
-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안 제6조 ~ 제8조)
-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안 제9조 ~ 제10조)
-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구축에 관한사항 등(안 제11조 ~ 제14조)
-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18조)
-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안 제19조 ~ 제21조)
- 도로명주소 사용촉진 및 새주소위원회 등(안 제22조 ~ 제31조)

3. 관계법령 : 붙임

4. 의안전문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첨 부 1. 근거법령 1부.

2. 입법예고문 사본 1부.

3.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현황 1부.

4.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표준 조례안 공문 사본 1부.

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도로명의 변경

제3조(도로명의 변경 요건)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 도로명을 변경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 변경 신청일 현재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자(이하 "주소사용자"라 한다. 이하 같다)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제4조(도로명의 변경) ①제3조제2호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신청을 받은 날 또는 제3조제1호의 사유로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 이외의 자도 도로명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

견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현행 명칭과 희망하는 명칭(복수안)

2. 해당 도로명의 변경 추진사유

3.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방법 및 기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받거나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천시 새주소 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야 한다.

1. 변경 신청된 도로명의 연혁, 제정·변경추진 사유

2. 변경 신청된 도로구간의 건물번호수 및 주소사용자 현황

3.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 및 조달방법

4.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 및 시장의 의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와 변경 절차(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시보·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해야 한다. 다만,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그 결과를 공고한 날로부터 31일 이후 40일 이내에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시보·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제3조제2호의 경우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고,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 변경 희망안의 1순위 도로명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규정된 주소사용자 2분의 1 이상에 대한 서면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⑦시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자료를 정리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30일 이

내에 변경된 도로명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도로명주소의 고지 · 고시) ①시장은 영 제21조 및 제4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자 ·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 · 고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고지 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에 관한 사항
3. 해당 도로명을 부여한 사유
4. 법적주소의 전환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는 우선적으로 통 · 리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 · 리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 · 설치

제6조(건물번호판의 규격) ①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로, 노(路)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 · 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1,0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 · 세로의 길이를 각각 15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5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2.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숫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이는 경우에는 글자의 가로 · 세로의 길이가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예외로 한다)으로 한다.

3.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한 폐다각형의 내부면적이 제1호에서 정하는 규격 이상으로 한다.

②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의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있는 위치에 운전자·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설치 완료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교부시기(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제9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준공예정일(건축물의 경우 임시사용·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 90일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인가서

2. 사업계획도(축척 3,000분의 1 이상)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명 시설을 자체 제작·설치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2. 사업지역에 설치할 도로명시설의 종류, 위치 및 수량

3.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기간

4. 도로명 시설을 시장이 설치하도록 할 경우의 비용 납부방법(법 제10조제2항 규정 관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자체 제작·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시행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시설의 직접 설치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 ① 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도로명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 신청(건축물의 경우는 임시사용·동별 사용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11조(도로명 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도로명 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 사업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시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사업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도로명기본도의 작성)**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도로명기본도에 배경자료(철도, 호수, 하천, 공원, 교량 등을 말한다)와 보조자료(건축물군, 교차로, 지하철·철도역사, 관광지 등을 말한다)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 시장은 도로구간의 현황, 도로별 해당 도로명의 부여·변경사유 및 부여·변경일자 등을 제천시 도로명관리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 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 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 제16조(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 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7조(도로명시설의 점검) ① 시장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가 도로명 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장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

제19조(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① 시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 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시보·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에 대한 광고계획
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와 전자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제작수량
3. 안내표지판의 종류, 제작수량, 설치위치, 규격

4. 광고사업 참가자격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제출서류(제2항의 서류를 말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사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의 제작·구성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4. 그 밖에 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라 광고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천시 새주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광고사업자를 심의한다.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④제3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배점부여기준은 제천시 새주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⑤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에게 제천시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고, 시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개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안내표지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시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제21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22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장 제천시 새주소 위원회 등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천시 새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 ③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도로구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2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사업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3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폐지) 「제천시가로명에관한조례」(제천시 조례21호 1995. 1. 3)는 이를 폐지한다.
- ③(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도로명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5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도로명	현행			
	변경희망안	1순위 :		
		2순위 :		
		3순위 :		
변경 신청사유				
희망안별 부여사유	1순위 :			
	2순위 :			
	3순위 :			
건물번호수				
주소사용자수				
변경 동의자수				
<p>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을 신청합니다.</p> <p>첨부 :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뒤쪽의 양식 활용) ○○부.</p> <p>년 월 일</p> <p>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제 천 시 장 귀하</p>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뒤쪽)

도로명변경 동의자 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서명
1.						
2.						

[별지 제2호서식]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도로명					
건물번호					
건 물 번 호 판	규격				
	모양				
	재질				
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설치를 신청합니다.					
첨부 : 건물번호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도로명				
건물번호				
건 물 번 호 판	규격			
	모양			
	재질			

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건물번호판 설치사진 2매

(근경사진 1매, 건물 1/3이상 포함된 전경사진 1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도로명부여 신청서				처리기간 50일
신청인 (사업시행자)	성명 (사업시행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사업명				
토지소재				
인 가 내 용	사업구분			
	사업기간			
	인가일			
	면적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 부여를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인가서 1부. 2. 사업계획도 1부.				
년 월 일				
신청인(사업시행자)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광고사업 신청서				처리기간 32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신청내용	1. 도로명주소안내도 2. 안내표지판			
수행능력	인력구성			
	자산규모			
	최근3년간 수행실적			
	기타 실적			
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 주소 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광고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p>첨부 : 1.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제작·구성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4. 그 밖에 광고사업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도로명시설 광고사업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	광고내용			광고사업자		선정일	완료일	비고
	종류	수량	기간	성명	주소			

210×297mm(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7호서식]

건물번호판 교부대장

일련 번호	도로명	건물번호	접수일자	교부일자	신청자		수령자	비고
					성명	주소		

297×210mm(보존용지(2종) 70g/m²)

[별표 1]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9조제4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15	
	가. 당해 광고사업에 참여할 인력구성	(5)	
	나. 최근 3년간 영업실적	10	
	- 광고 수행실적	(5)	
	- 기타 영업실적	(5)	
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30	
	가. 제작비용 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15)	
	나. 광고주 모집방법의 실현가능성	(15)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30	
	가.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적합성	30	
	- 안내도 종류별 규격의 적정성	(5)	
	- 광고지면의 비율	(5)	
	- 안내도 구성의 참신성	(5)	
	나. 안내표지판의 적합성	15	
	- 안내표지판 디자인의 참신성	(10)	
	-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정성	(5)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25	
	가. 목표대상(인지도 제고)의 적절성	(10)	
	나. 비용대비 효과성	(5)	
	다. 안내도 배포 계획의 효율성	(10)	

□ 근거법령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35호]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사업 추진과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사업 추진과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의 시행자)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8조 (도로명부여 등) ① 시장등은 사업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2. 도로구간의 설정
3. 도로명의 부여방법의 결정 및 부여
4. 건물번호의 부여방법의 결정 및 부여
5.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대장의 작성 및 비치
6. 도로명판의 제작·설치
7.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8. 건물번호 부여신청 등
9. 기본도의 작성
10. 그 밖에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전산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기본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안내도의 작성·제작·배포 등) ① 시장등은 기본도를 이용한 안내도

를 작성하여 제작·배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도는 「측량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 한다.

②시장등은 안내도의 확대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신청한 광고를 게재한 안내도를 작성하여 제작·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신청한 자는 이에 관한 광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이하 "도로명자료"라 한다)를 사용하여 안내도를 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도로명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을 원칙으로 제공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도로명주소의 활용 활성화의 목적으로 안내도 제작을 요청하였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제작대상 지역이 전국 또는 2이상 시·도인 경우 : 행정자치부장관
 2. 제작대상 지역이 해당 시·도 또는 2이상의 시·군·자치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시인 경우 : 시·도지사
 3. 제작대상 지역이 해당 시·군·자치구인 경우 : 시장 등
-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은 도로명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없다.

제10조 (원인자 부담) ①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로를 개설하거나 새로운 도로명 부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준공허가 전에 새로운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시장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로명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유지관리의 위탁 등) ①시장등은 도로명사업이 완료되거나 추진 중인 지역에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등은 연 1회 이상 도로명시설 등을 일제 조사하여 망설 및 훼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도로명시설의 광고) ①시장등은 도로명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 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시설에 장애가 없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사업자의 선정과 광고방법 및 광고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비 수입은 도로명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 (도로시설물의 사용) ①시장등은 도로명시설 중 도로명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신호등·도로표지판·전선주·가로등·전신주 등이 설치된 지주를 해당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주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지주를 관리하는 관리청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관리청 또는 관리자는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를 관리하는 관리청 또는 관리자는 지주의 교체·이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해당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①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는 해당 건물 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시설의 설치 등의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②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 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망실한 때는 해당시장등에게 재교부 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 등이 소유자·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 또는 망실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새로이 건물 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교부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관한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17조 (도로명사업 지원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 시설의 설치·유지관리·손해배상공제가입·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제18조 (도로명주소의 부여 등) ① 시장등은 사업계획의 시행에 의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공법관계의 주소변경)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법인 등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 및 위치관련 전산시스템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주민은 도로명주소를 이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를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때에는 전산화가 구축된 경우에는 전산화에 의한 방법으로 일괄수정하고, 전산화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소변경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공공기관의 장은 주소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21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주소표시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서 주소표시
3.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
4. 공문서 발송시 주소표시
5. 위치안내표시판 제작과 위치표시 및 위치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위치안내
7. 그 밖에 주소 및 위치표시와 관련된 사항

제22조 (도로명주소 사용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
인 등은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에 대한 우편
요금 등 수수료의 감면
2.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지번주소를 도
로명주소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검색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택배회사, 음식점 등 배달 업소와 공공기관에 도로명 안내지도를 비
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를 용도별·규격별로 제작·보급하거
나 전산 프로그램의 제공 등 지원
4. 버스·지하철 정류장, 광장, 지하도, 시장 등 공공시설의 위치안내판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위치표시 지원
5. 관광호텔 지도, 교통 지도, 렌터카 지도, 관광안내 지도, 백화점 지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등 각종 위치안내 지도에 도로명안내지도 표기
지원
6. 그 밖에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7.4.5 대통령령 제19999호]

제3조 (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방법 등) ①도로명주소는 특별시·광역

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명, 시·군·자치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포함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명,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명, 읍·면명,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순으로 표기한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의 끝 부분에 도로명주소의 참고항목으로 특별시·광역시와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동(洞)지역에 있어서는 법정동의 명칭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공동주택의 명칭을, 읍·면지역에 있어서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공동주택의 명칭을 각각 괄호안에 표기한다.

②건물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다만, 지하에 위치한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번호 앞에 '지하'를 붙여서 표기한다.

③그 밖에 건물번호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④상세주소의 표기는 동(棟)번호, 호(號)수(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말한다)의 순으로 한다.

⑤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에 ','를 표기한다.

제5조 (기초조사) ①시장·군수·자치구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로명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위한 도면을 준비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도로구간의 설정) ①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여야 하는 도로는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노(路)·길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도로별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등이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로 : 도로의 폭이 40미터 또는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 중 도로의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도로

2. 노(路) : 도로의 폭이 12미터 이상 40미터 미만 또는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중 도로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도로
3. 길 : 대로와 노 외의 도로
 - ③도로구간은 도로의 폭·방향·교통흐름 등 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하되 도로구간의 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④도로구간은 강·하천 등의 지형·지물, 시설물, 행정구역(시·군·구와 읍·면을 말한다)의 경계 등을 고려하여 그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⑤시장등은 도로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도로구간의 설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⑥제1항에 따른 도로구간을 설정하기 위한 도로망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 (도로명의 부여 등) ①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시장등은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성, 지역주민의 의견 및 지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도지사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장등 사이 또는 시·도지사 사이에 동일한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동일한 도로명으로 변경하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도로명을 도로명판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여야 한다.
- ⑤~~시장등은 도로명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후 3년 이상의 기간으로서 시·군·구 조례(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 중에서 시·~~

군·구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가 이미 부여된 도로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건물번호의 부여 등)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물 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을 기점부터 종점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는 해당 건축물 등의 주된 출입구에 접하고 있는 도로구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부여된 번호(이하 "기초번호"라 한다)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③ 지하상가 등 지하에 위치하여 단독으로 운영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주된 출입구에 접하고 있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주된 출입구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중앙에 가장 가까운 기초번호나 교차로에 위치한 출입구에 접하고 있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초번호와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도로명시설의 제작·설치 및 관리 등)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도로와 건축물 등에 도로명시설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② 2 이상의 관련된 건축물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마다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중 동(棟)번호를 표기한다.

③ 시장등은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도로명시설이 못쓰게 되거나 분실된 때에는 원인조사 및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운전자에 대한 도로안내를 위하여 「도로

법」 등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표지를 제외한다)의 종류·규격·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⑤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의 규격·색상·부착위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와 다르게 제작·설치하려는 경우와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시켜 제작·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작·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기본도의 작성) 시장등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기본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구역의 명칭 및 경계
2. 도로선과 도로구간의 기점 및 종점
3. 도로명
4. 기초번호
5. 필지경계 및 지번
6. 건축물 등의 위치 및 형태
7. 건물번호와 그 주된 출입구
8. 관공서·학교 등 주요 공공시설물의 명칭
9. 그 밖에 도로명주소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도로명자료의 제공 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이하 "도로명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자료의 이용목적 및 요구내용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 및 공익성
 2.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신청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③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도로명자료의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도로명자료의 사용에 관한 승인을 얻은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유지관리의 위탁 등)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8조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에 게재할 수 있는 광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업소명, 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 등

2. 안내표지판의 경우에는 업소의 명칭 또는 상징형 도안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게재한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을 제작·설치·배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안내표지판을 이용한 광고는 안내표지판에 붙인 안내도에만 게재하여야 한다.

④ 광고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공고 및 광고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19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새로 부여받으려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건물번호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건물번호를 부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시·군·구 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8조 및 제20조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도로명주소의 고시 및 안내도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시장등 소속하에 시·군·구새주소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군·구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④위원은 도로명사업과 관련되는 기관의 관계공무원과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등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시·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의 고시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⑥시·군·구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 중 "중앙위원회"는 "시·군·구위원회"로, "행정자치부장관"은 "시장등"으로 본다.

⑦시·군·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07.4.11 행정자치부령 제381호]

제3조 (현지조사방법 등) ①시장·군수·자치구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가 쉽도록 수치지도, 수치화된 지적·임야도, 공시지가도, 도시계획도 등을 활용해 지번과 도로 및 건축물현황 등을 합성해 500분의 1 이상의 대축척으로 기초조사용 도면을 준비해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부득이 하면 축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건축물의 출입구 표시는 화살표(→)와 ‘.’로 표시하되, 화살표는 3밀리미터부터 4밀리미터의 길이로 표시하고 주된 출입구 표시는 ‘주’로, 보조출입구 표시는 ‘보’로 표기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로 출입하는 후면 건축물의 출입구 표시는 주 진입도로로부터 출입구까지 화살표를 연장하여 표시한다.

③ 기초조사용 도면에 도로 및 건축물 등이 빠졌거나 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현황이 도면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현황을 세밀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정리할 수 있다.

④ 담장이 있는 건축물은 대문의 위치에, 담장이 없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출입구 위치에 각각 주된 출입구를 표시한다.

⑤ 건물번호의 부여대상이 아닌 부속 건축물의 창고, 축사 및 공장 내의 분산된 건축물 등은 주된 건축물과 묶어 세밀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표시한다.

⑥ 영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해 하나의 건물번호를 부여한 공동주택 등은 통행이 빈번하고 주된 도로변에 접한 쪽을 주된 출입구로 표시한다. 다만, 공동주택 등에 포함된 상가 등은 개별 건축물로 보아 별도로 주된 출입구를 표시할 수 있다.

⑦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출입구(보조출입구를 포함한다)를 가지면 폭이 더 넓고 길이가 더 긴 도로에 접한 출입구를 주된 출입구로 표시하고, 출입구가 대로와 대로, 노(路)와 노(路), 길과 길에 각각 접한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접한 출입구를 주된 출입구로 표시한다.

제4조 (도로망의 구성 등) ① 시장등은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할 때 20동 미만의 건축물 등이 있는 막다른 도로와 2개 이상의 도로구간을 연결하는 100미터 미만의 도로는 주 진입도로와 연속된 도로로 보고 별도의 도로구간을 설정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1. 10동 미만의 건축물이 있는 농촌지역의 막다른 골목으로서 도로주변에 신규 건축물 등의 신축 등 확장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종교시설·농장·과수원 등의 건축물이 주 진입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분산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3. 시장등이 지역특성 또는 주민의견 등을 고려해 도로명을 따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발관련사업 등에 의해 신규로 조성하는 대규모 단지 안의 도로와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 안의 도로 등은 인접도로의 도로망과 연계해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 ③ 도로노선이 이미 지정된 일반국도, 특별시·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 도는 가급적 기존 노선을 유지해 도로망을 구성하고, 고속국도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기존노선을 유지해 도로망을 구성한다.
 - ④ 시장등이 영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한 경우 도로구간의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의 설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점과 종점은 서쪽에서 동쪽,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등은 시·군·자치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가 방사형(放射形) 도로체계로 구성되거나 일방통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흐름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다.
 2. 상위도로에서 갈라져 분기점부터 도로구간을 설정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분기점을 기점으로 한다.

제5조 (도로명의 부여 등)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에 관한 세부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등은 도로명을 부여하는 지역 안에서 같은 도로명을 중복하여 부여할 수 없다.
2. 2개 이상의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읍·면 및 동에 걸쳐있고, 도로구간을 달리하는 도로에는 동일한 명칭을 부여한다.
3. 노(路)와 길에 대해서는 도로의 방향 및 위치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분기되는 도로 중 폭이 더 넓고 길이가 더 긴 도로의 도로명에 도로구간의 기초번호 또는 방위를 명칭으로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4. 도로명이 이미 부여된 구간은 도로구간이 변경되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기존 도로명을 그대로 부여한다.

5. 도로명에는 지명, 자연 마을 이름, 역사적 인물,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 유적 및 문화재의 명칭과 도로의 위치와 기능, 시·군·구 이상의 권역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공공시설물 명칭 등을 반영하여 부여할 수 있다.
6. 도로명의 표기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고, 도로명의 약어의 표기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건물번호 신청처리)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신청하려면 건축물의 배치도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를 시장등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제천시 공고 제 2007 - 1220

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9. 20

제 천 시 장

제천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시설물의 설치·유지 관리·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하는
-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는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내용

-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내용(안 제3조 ~ 제5조)
-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안 제6조 ~ 제8조)
-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안 제9조 ~ 제10조)
-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구축에 관한사항 등(안 제11조 ~ 제14조)
-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18조)
-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안 제19조 ~ 제21조)
- 도로명주소 사용촉진 및 새주소위원회 등(안 제22조 ~ 제31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0월 10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토지정보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778, FAX 641 - 5798 담당자 : 홍수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현황

1. 사업목표

- 우리나라의 현주소 표시체계는 급속한 경제개발 및 인구급증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다변화로 지번간의 연계성이 없어져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방식의 새로운 주소체계를 도입하여
- 방문, 통신의 불편, 화재, 범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물류비용의 감소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2. 일반현황

- 사업명칭 :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 사업기간 : 2000년 10월 ~ 2003년 12. 31 까지(3년 3개월)
- 사업량 : 노선수(1,292개 노선), 건축물(23,914동)
- 총사업비: 1,431백만원
 - 관리시스템D/B구축 및 용역비 : 300,000천원(국비: 150,000포함)
 - 도로명판제작 및 설치비 : 820,000천원
 -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비 : 308,000천원
 - 기타 홍보제작 및 장비구입 : 3,000천원

3. 주요 사업성과

- 2000년 ~2001년 : 도로명부여사업 용역
 - 새주소 부여체계 구축
 - 새주소 전산시스템 구축 및 전산장비 구입

-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 배포

○ 2002년 : 도로명판 설치사업

- 1차 도로명판설치 설계 및 집행 : 452 개소 (주간선, 보조간선)
- 2차 도로명판설치 설계 및 집행 : 1,572 개소 (소로 및 골목길)

○ 2003년 : 도로명판 설치사업 및 건물번호판 설치사업

- 3차 도로명판설치 설계 및 집행 : 330 개소 (교차로 및 1,2차
사업누락분)

- 건물번호판 설치사업 : 23,152동

○ 2004~2006 : 새주소 유지보수 및 홍보활동

- 사업완료 후 건축물 신축 및 말소 등으로 인한 건물번호판
부여와 제작설치 (반제품 조달 구매하여 직접 제작하여 부착하고 있음)
-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훼손 및 파손시 즉시 교체
- 새주소 활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2007 : 새주소 고지 고시를 위한 준비

- 새주소 전산시스템(KLIS-m)고도화 추진
- 지속적인 새주소 관련 시설물 유지보수
- 법적주소 전환을 대비한 새주소 활용·홍보강화

4. 기대효과

- 국민에게는 다양한 위치표현과 길찾기의 효율화를 통한 안전한 생활영위
- 공공서비스의 물류비용 감소와 신속한 대국민 응급서비스로
내부행정 효율화와 제공
- 정확한 주소자료의 구축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질서는 충북 행복한 도민



충청북도

BIG
 경북도 충북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

1. 행정자치부 새주소정책팀-1248(2007.08.09)호와 관련입니다

2. 새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놀림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 등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조례제정 실적은 향후 중앙의 새주소사업 추진실적 평가항목에 반영될계획이오니 조례제정을 완료할 때까지 제정 상황을 매월 5일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제정 상황 제출서식

시·군	조례제정 진행상황	향후일정	비고
○○○	예) 관련부서 의견수렴 종, 입법예고 등	○월 ○일 입법예고 ○월 ○일 의회심의 ○월 ○일 제정 완료 예정	

- ▶ 일 1.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 주요내용 1부**
 2.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 1부 끝



충 청 북 도 자

수신자 청주시장(도시계획과장), 충주시장(중합민원실장), 청원군수(도지정보팀장), 청원군수(민원과장), 보은군수(민원과장), 옥천군수(민원과장), 영동군수(민원과장), 증평군수(중합민원과장), 진천군수(중합민원실장), 괴산군수(민원과장), 읍성군수(중합민원과장), 단양군수(민원봉사실장)

*자발서설주사 이현창 토지정보팀장 08/9 한홍구

협조자 자발서설사무관 양승소 자발행정사무관 김길환

시행 토지정보팀-6263 (2007.08.13.) 접수 토지정보팀-6071 (2007.08.14.)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문화동) / <http://ctb1.net>

전화 043) 220-4324 / 전송 043) 220-4319 / jpihd@hanmail.net / 공개